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지방전문경력관규정
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('21.1.12. 공포) 및 「지방공무원법」('21.00.00. 시행)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하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임용권자의 범위에 지방의회의 의장 추가(안 제3조, 제4조, 제9조)
 -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도 임용권 부여
- 나.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의 적용 범위 관련 미비사항 보완(안 제2조)
 -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, 한시임기제공무원만 적용 제외되어 있으나, 전문임기제공무원도 적용범위에서 제외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0000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

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”을 “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,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장(교육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를 “지방자치단체의 장(교육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과 지방의회의 의장 [시·도의회의 의장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회의 의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]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을 “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”으로 한다.

제9조 후단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”를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·도의회의 의장이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적용 범위) ① 이 영은 「지방공무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 [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(이하 “임용령”이라 한다) 제3조의2에 따른 <u>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</u> 및 <u>한시임기제공무원</u> 은 제외하며, 이하 “지방전문경력관”이라 한다]에 대하여 적용한다.	제2조(적용 범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</u> , <u>한시임기제공무원</u> 및 <u>전문임기</u> <u>제공무원</u>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3조(지방전문경력관직위 지정) ① <u>지방자치단체의 장(교육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</u> 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지방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.	제3조(지방전문경력관직위 지정) ① <u>지방자치단체의 장(교육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과 지방의회의 의장[시·도의회 의장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회의 의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]</u>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4조(직위군 구분) ① (생략)	제4조(직위군 구분) ①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347